#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36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이원택·장종태·박희승

정진욱 · 김한규 · 이병진

윤준병·서삼석·문대림

김윤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

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법률 제 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300억원"을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별 인구 및 경제 규모가 반영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제38조제4항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u>600</u>억 원\_-----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1,000억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별 인구 및 경제 규모가

## <u>⑥</u> (생 략)

-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u>제6항</u>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